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신남방) 파트너와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강소 특구) 소재기업 간 전략적 매칭을 통해 특구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플랫폼 형태로 지원

※ PMS 과제기본정보 설정 : 영문 사업명 “Global Marketing Platform“, 보안등급 “일반과제”, 특구기술분류 “사업화” 선택, 6T관련기술은 전략적으로 집중 예정인 기술 분야 자유선택

※ 인도를 포함한 복수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 가능 * 대상국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필수포함)

□ 사업내용

- 글로벌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투자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발굴·매칭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이내(1개 수행기관 선정)

※ 실제 지원 예산은 선정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매칭을 통해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내법인(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법인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위탁수행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참여기관은 PMS 법인회원 가입시, “기관구분-외국기업” 선택 불가
- 국내법인 컨소시엄 참여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사업비 집행계획(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계획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해당 과제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계속” 또는 “중단” 과제 여부) 및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PMS 신청시 협약유형 “연차협약”, 총 수행기간 2년(’20.6.1 ~ ’22.5.31), 1차연도 협약기간 1년(’20.6.1 ~ ’21.5.31)으로 기재하고, 사업의 내용, 목표 및 사업비 등 1차연도 부분만 작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비영리법인은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

* 비영리법인 :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 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중 정부출연금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부담분 중 인건비 비율 하한 적용

* 대기업 인건비 현물부담액 5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편성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세부 사업내용

구분	내용(예시)
해외시장조사	해외(신남방) 진출 유망 분야 및 시장 동향 사전 분석을 통하여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할 주요 산업군을 선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수출투자상담회 등) 구성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특구내 글로벌 진출 관심기업 Pool을 구축하고, 이 Pool을 바탕으로 각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별로 참가기업 발굴, 모집, 선정을 추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특구 지역별 균형선발 원칙, 선정결과는 반드시 신청 기업에 통보)
해외 파트너 발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별 필요에 맞는 해외 파트너(수입업체, 바이어, 유통사, 투자자 등) 발굴을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수출/투자상담회, 해외전시회, 화상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파트너와 특구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밀착 지원
해외 계약 프로세스 지원	비즈니스 매칭 이후 해외 파트너의 추가요청 대응 지원, 해외 파트너 신용도 분석, 해외 계약서 법률 자문 등 계약 프로세스 지원
성과관리	참가기업의 해외매출, 해외 투자유치 등 주요 성과 추적·관리

* 주간/월간 보고시 각 프로그램별 참가기업 모집홍보/선정 계획(추진일정 및 선정기준/절차 포함) 및 선정결과, 참가기업별 해외파트너 발굴 현황 및 해외진출 성과 현황 등을 수시로 공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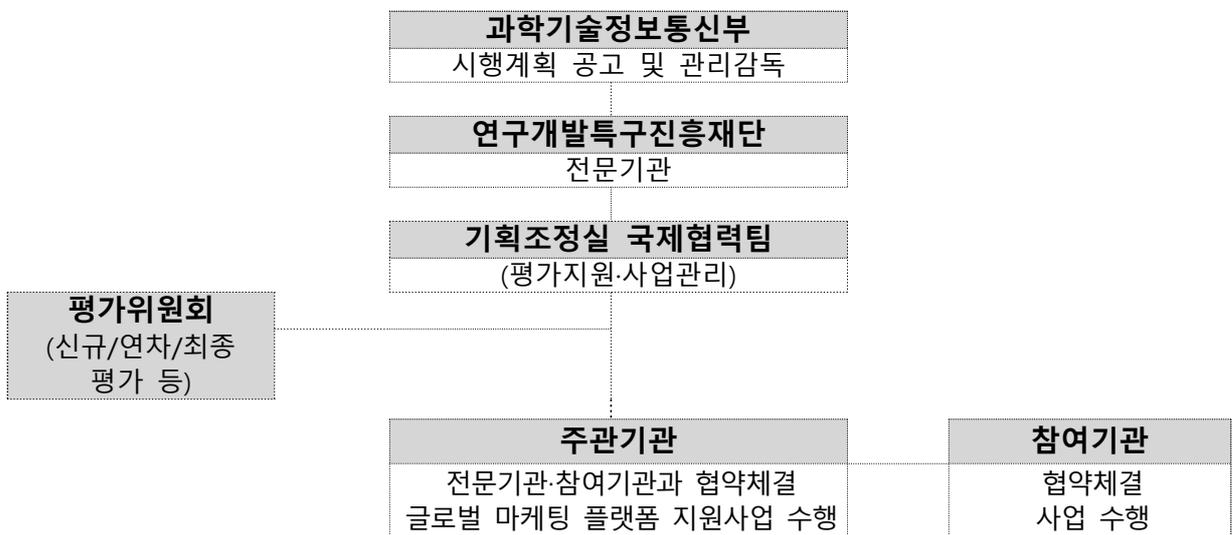
□ 수행 조건

구분	세부 내용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참여인력은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본 사업 포함 5과제 이내로 참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참여제한여부 조회를 위해 모든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필수제출 · 총괄책임자 : 사업총괄·운영자로서 본 사업 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 등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신청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서 본 사업 포함 3과제 이내로 참여 · 상근·전담인력 :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전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협약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로 동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 * 상근·전담인력 중 특구재단의 요청에 전담 대응할 인력 1인(실무책임자) 지정 필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에서 수출/투자 상담회 개최, · 해외전시회 및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 해외 바이어/투자자를 초청하여 인바운드 수출/투자 상담회 개최 · 특구기업 대상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등 ·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주간/월간보고서 프로그램별 세부계획 및 일정을 수시로 공유하여야 함 · (필수수행) 아래 해외전시회 개최 기간 전·후로 해당 전시회 개최 지역(국가) 또는 인근 지역(국가)에서 수출 또는 투자상담회를 개최(특구재단이 공동관 참가를 추진하는 해외전시회의 연계 행사로 개최하며, 수출/투자상담회 개최 소요비용 일체는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사업비에서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 연계행사(수출/투자상담회) 개최 필수인 해외전시회 ></p> <table border="1" data-bbox="352 1238 1377 1361"> <thead> <tr> <th>전시회명</th> <th>개최지역(국가)</th> <th>개최기간</th> <th>주요 전시품목</th> </tr> </thead> <tbody> <tr> <td>Vietnam Expo in Ho Hchi Mihn City</td> <td>호치민(베트남)</td> <td>'20.12.03 ~ 12.05</td> <td>자동차, 건설, 전자/가전, 기계, 홈리빙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수지원 해외전시회 리스트는 특구재단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하며, 상기 전시회 외에 특구 재단에서 참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기업 모집/발굴, 선정 관련 협력 필요 	전시회명	개최지역(국가)	개최기간	주요 전시품목	Vietnam Expo in Ho Hchi Mihn City	호치민(베트남)	'20.12.03 ~ 12.05	자동차, 건설, 전자/가전, 기계, 홈리빙 등
전시회명	개최지역(국가)	개최기간	주요 전시품목						
Vietnam Expo in Ho Hchi Mihn City	호치민(베트남)	'20.12.03 ~ 12.05	자동차, 건설, 전자/가전, 기계, 홈리빙 등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목표) 특구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정량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 비즈니스 매칭 행사 개최건수 (필수지원 행사 포함 4건 이상 - 신청기관에서 목표치 제시) - 해외 현지 비즈니스 매칭 행사 참여기업 수 (필수지원 행사 참여기업 포함 20개사 이상 - 신청기관에서 목표치 제시) - 해외 현지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오프라인 상담 주선 건 수 (필수지원 행사 포함 200건 이상 - 신청기관에서 목표치 제시) - 지원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진출 계약 실적(해외 투자유치, 해외 유통·대리점 계약, 수출, 외국정부/기업 발주 사업수주 금액 등의 총합) (미화 200만불 이상 - 신청기관에서 목표치 제시) · (기타목표) 필수목표 외 사업수행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수행기관 자율지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화상상담 개최건수, 인바운드(국내) 투자/수출상담회 개최건수 및 참여기업 수, 글로벌 MOU 체결지원 건수, 해외 (합작투자) 법인 설립지원 건수, 해외 홍보자료 제작지원 건수, 해외 온라인 플랫폼((Ex)아마존) 입점지원 건수,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건수 등 · * 성과목표치는 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협약 체결 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이고, 해당 증빙의 실효성 여부는 (연차/최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p>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비, 특구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해외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특구기업의 항공, 숙박 등 체제비, 해외전시회 입장권 등) 및 후속지원 비용 일체를 포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 중 수혜 특구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연구활동비) 작성 시, 각 프로그램별로 소요비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특구기업 해외체재비와 수행기관 국외여비를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직접비의 30% 이내로 편성을 권장함 																							
<p>사업 수행중 작성자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내용</th> <th>제출 부수</th> <th>제출일자</th> </tr> </thead> <tbody> <tr> <td>주간 보고서</td> <td>주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주 추진 계획</td> <td>주간보고서 (전자파일 제출)</td> <td>매주 금요일</td> </tr> <tr> <td>월간 보고서</td> <td>월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월 추진 계획</td> <td>월간보고서 (대면보고+전자파일 제출)</td> <td>매월 마지막주 목요일</td> </tr> <tr> <td>연차수행 결과 보고서</td> <td>본 사업으로 수행한 기업지원 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 및 증빙</td> <td>연차결과보고서(전자파일) 발표자료PPT(전자파일)</td> <td rowspan="2">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td> </tr> <tr> <td>차년도 사업 계획서</td> <td>차년도 사업 수행 세부계획 (참여인력, 해외협력기관, 기업선발, 국내외 프로그램, 사업비, 성과목표 포함)</td> <td>차년도 사업계획서 (전자파일)</td> </tr> <tr> <td>연차정산 보고서</td> <td>당해연도 전체 사업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td> <td>회계감사보고서 (전자파일) * 특구재단 지정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보고서</td> <td>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td> </tr> </tbody> </table> <p>* 재단 결정에 따라 현장실사 또는 사업수행 점검을 위한 대면회의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p>	구분	세부 내용	제출 부수	제출일자	주간 보고서	주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주 추진 계획	주간보고서 (전자파일 제출)	매주 금요일	월간 보고서	월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월 추진 계획	월간보고서 (대면보고+전자파일 제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연차수행 결과 보고서	본 사업으로 수행한 기업지원 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 및 증빙	연차결과보고서(전자파일) 발표자료PPT(전자파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차년도 사업 계획서	차년도 사업 수행 세부계획 (참여인력, 해외협력기관, 기업선발, 국내외 프로그램, 사업비, 성과목표 포함)	차년도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연차정산 보고서	당해연도 전체 사업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전자파일) * 특구재단 지정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보고서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분	세부 내용	제출 부수	제출일자																					
주간 보고서	주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주 추진 계획	주간보고서 (전자파일 제출)	매주 금요일																					
월간 보고서	월간 사업추진실적 및 차월 추진 계획	월간보고서 (대면보고+전자파일 제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연차수행 결과 보고서	본 사업으로 수행한 기업지원 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 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 및 증빙	연차결과보고서(전자파일) 발표자료PPT(전자파일)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차년도 사업 계획서	차년도 사업 수행 세부계획 (참여인력, 해외협력기관, 기업선발, 국내외 프로그램, 사업비, 성과목표 포함)	차년도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연차정산 보고서	당해연도 전체 사업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전자파일) * 특구재단 지정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보고서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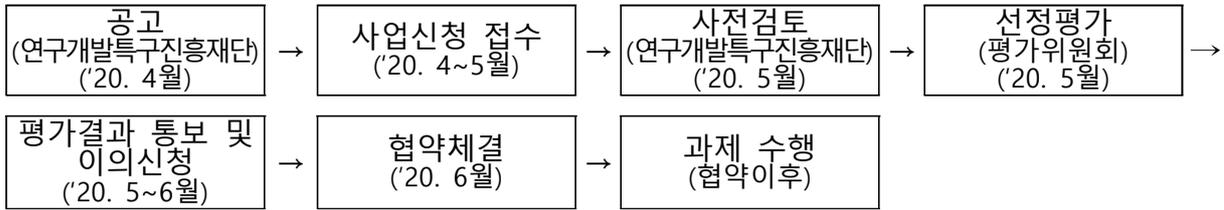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1차연도 신규선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2차연도) 1차연도 지원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방법 및 절차, 일정은 향후 공지

4.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지원 기관별 15분 발표 예정 - 추후 조정가능) 진행

* 최종 선정 이후에도 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정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사 결과 민간부담금의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한 경우 등 결격 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 평가항목

구분 (비중)	세부평가 항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30)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 포함), 관련 실적, 해외 현지 네트워크 확보 수준	10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국내/해외)의 적절성	10
	프로그램 운영 전담 정규직원 수 및 경험(전문성)	10
프로그램 체계성 (40)	수요기업 발굴 계획의 적절성	10
	선정기업의 수요맞춤형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계획의 적절성	10
	프로그램(국내/해외)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10
	선정기업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성과목표 및 사업비 (30)	필수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10
	기타 자율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및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 PMS 신청 절차 : 1. 기업 회원가입(주관/참여기관) → 2. 개인 회원가입(기관대표자/과제 책임자) → 3. 과제책임자 개인계정 로그인 → 4. 마이페이지-과제신청-공고명 검색 → 5.과제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 04. 03(금) ~ '20.05.08(금)
- 접수기간 : '20. 04. 23(목) ~ '20.05.08(금) 15:00 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제출 서류별 별도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파일명 명기(파일명 예시: 4_사업자등록증_기업명(주))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기관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3	발표자료		-	주관기관 제출
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	모든기관 각각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최근 3개년도(2017~2019)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모든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김주은 연구원	042-865-8901	invest@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지원제외 대상 규정은 연차별 협약 체결시 모두 적용)

□ 유의사항

사업수행 관련
<p>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p> <p>나. 본 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 등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p> <p>다. 1차연도 사업기간 종료월에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 수행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성공적으로 글로벌 진출지원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2차연도 후속과제 추진</p> <p>라.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2.협약 - 다. 협약체결의 중지”에 해당할 경우, 2차연도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통보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계속”과제 중단으로 처리함</p> <p>마. 사업 수행기간 동안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 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체결(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며, 위배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바.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가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p> <p>사. 공고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p> <p>*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p>
사업신청 관련
<p>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p> <p>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p> <p>다. 필요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p> <p>라. 과제선정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특구재단 국제협력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p>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